

# 골판지포장 · 물류산업정책

## Corrugated Packaging & Logistics Industry Policy

이 난은 골판지포장 산업과 물류 산업 관련 정부 정책 및 산업계 정책 건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부여기준중 개정

환경부 고시 제 1997-28호  
개정 1997. 8. 26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부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NO.2의 대상제품명 "재생종이를 포함한 화장지류"

의 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고, NO. 4의 대상제품명 "유아용 천기저귀"를 "인체 저자극성 섬유 제품류"로 하여 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며, NO.7 및 NO.15를 삭제하고, NO.38 "레이저빔프린트용 재충전 토너카트리지"를 각각 신설하여 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NO	대상제품	부여기준	인증사유																																					
2	재생종이를 포함한 화장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지를 90%이상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함.</li> <li>- 제품의 포장체 및 중심코어는 재생지 함량 50%이상의 용지만을 이용하여 제조하여야 함. (단, 20매 이내의 소형 평판 화장지는 제외함)</li> <li>- 생산과정중 제품의 백색도 증진을 위하여 형광 증백제를 첨가하지 않아야 함.</li> <li>- 해당제품 및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li> </ul>	인증사유 산림보호																																					
4	인체 저자극성 섬유 제품류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험항목</th> <th colspan="3">대상제품별 부여기준</th> <th rowspan="2">시험 방법</th> </tr> <tr> <th>유아용품 (36개월 미만)</th> <th>유아용품외 피부지속 접촉품(1)</th> <th>유아용품외 피부간헐 접촉품(2)</th> </tr> </thead> <tbody> <tr> <td>포름알데히드함량 (mg/kg)</td> <td>흡광도:A-A0 치가 0.05이하</td> <td>7이하</td> <td>300이하</td> <td>KS K 0611</td> </tr> <tr> <td>PCB(Polychlorinated Biphenyl)</td> <td>검출되지 않을 것</td> <td>검출되지 않을 것</td> <td>검출되지 않을 것</td> <td>GC MSD(3)</td> </tr> <tr> <td rowspan="2">pH</td> <td>모전</td> <td>4.0-7.5</td> <td>4.0-7.5</td> <td rowspan="2">KS K 0255</td> </tr> <tr> <td>기타</td> <td>4.8-7.5</td> <td>4.8-7.5</td> </tr> <tr> <td rowspan="3">중금속 (mg/kg)</td> <td>AS</td> <td>0.2이하</td> <td>1.0이하</td> <td rowspan="3">ICP, AAS(4)</td> </tr> <tr> <td>Pb</td> <td>0.2이하</td> <td>1.0이하</td> </tr> <tr> <td>Cd</td> <td>0.1이하</td> <td>0.1이하</td> </tr> </tbody> </table>	시험항목	대상제품별 부여기준			시험 방법	유아용품 (36개월 미만)	유아용품외 피부지속 접촉품(1)	유아용품외 피부간헐 접촉품(2)	포름알데히드함량 (mg/kg)	흡광도:A-A0 치가 0.05이하	7이하	300이하	KS K 0611	PCB(Polychlorinated Biphenyl)	검출되지 않을 것	검출되지 않을 것	검출되지 않을 것	GC MSD(3)	pH	모전	4.0-7.5	4.0-7.5	KS K 0255	기타	4.8-7.5	4.8-7.5	중금속 (mg/kg)	AS	0.2이하	1.0이하	ICP, AAS(4)	Pb	0.2이하	1.0이하	Cd	0.1이하	0.1이하	유해물질 함유량이 낮음
시험항목	대상제품별 부여기준			시험 방법																																				
	유아용품 (36개월 미만)	유아용품외 피부지속 접촉품(1)	유아용품외 피부간헐 접촉품(2)																																					
포름알데히드함량 (mg/kg)	흡광도:A-A0 치가 0.05이하	7이하	300이하	KS K 0611																																				
PCB(Polychlorinated Biphenyl)	검출되지 않을 것	검출되지 않을 것	검출되지 않을 것	GC MSD(3)																																				
pH	모전	4.0-7.5	4.0-7.5	KS K 0255																																				
	기타	4.8-7.5	4.8-7.5																																					
중금속 (mg/kg)	AS	0.2이하	1.0이하	ICP, AAS(4)																																				
	Pb	0.2이하	1.0이하																																					
	Cd	0.1이하	0.1이하																																					

NO	대상제품	부 여 기 준					인증사유
4	인체 저자극성 섬유 제품류	대상제품별 부여기준					유해물질 함유량이 낮음
		시험항목	대상제품별 부여기준			시험 방법	
			유아용품 (36개월 미만)	유아용품외 피부지속 접촉품(1)	유아용품외 피부간헐 접촉품(2)		
중금속 (mg/kg)		Hg	0.02이하	0.02이하	0.02이하	ICP,	
		Cu	25이하	50이하	50이하	AAS	
		T-Cr	1.0이하	2.0이하	2.0이하	(4)	
		Cr VI	검출되지 않을 것	검출되지 않을 것	검출되지 않을 것		
		Co	1.0이하	4.0이하	4.0이하		
		Ni	1.0이하	4.0이하	4.0이하		
잔류농약 (mg/kg)		DDT, DDD, DDE	0.5이하	1.0이하	1.0이하	GC-MSD	(3)
		Lindan	0.25이하	0.5이하	0.5이하		
		Aldrin	0.1이하	0.2이하	0.2이하		
		Deldrin	0.1이하	0.2이하	0.2이하		
		Heptachloride/ heptachloroep oxide	0.25이하	0.5이하	0.5이하		
		(α-, β-, δ-, ε-) Hexachlorocyclo hexane	0.5이하	1.0이하	1.0이하		
		2, 4, -D	0.1이하	0.1이하	0.1이하		
		2, 4, 5 -T	0.05이하	0.05이하	0.05이하		
		Toxaphen	0.5이하	0.5이하	0.5이하		
		총농축 잔류농약	0.5이하	1.0이하	1.0이하		
PCP(Pentachlorophenol) (mg/kg)			0.05이하	0.05이하	0.05이하	GC-ECD 또는 HPLC	
AZO-Dye stuff (mg/kg)		Compound. Gas-Nr. 4-Aminobiphenyl .... 92-67-1	각 물질별 30 이하	각 물질별 30 이하	각 물질별 30 이하	GC-MSD	(5)
		Benzidine .... 92-87-5					
		4-chloro-o-tolu idine..... .... 95-69-2					
		2-Naphtylamine. .... 91-59-8					
		O-Aminoazotoluene .... 97-56-3					
		2-Amino-4-nitro toluene... 99-55-8					
		P-Chloroanilone .... 106-47-8					
		4-Methoxy-m-phen ylenediamine..... ... 615-05-4					
		4, 4'-Diaminodip henyimetheane.... ... 101-77-9					

NO	대상제품	부 여 기 준					인증사유 유해물질 함유량이 낮음	
		시험항목	대상제품별 부여기준			시험 방법		
	유아용품 (36개월 미만)		유아용품외 피부지속 접촉품(1)	유아용품외 피부간헐 접촉품(2)				
4	인체 저자극성 섬유 제품류	AZO-Dye stuff (mg/kg)	3,3'-Dichlorobenzidine..... ...91-94-1	각 물질별 30 이하	각 물질별 30 이하	각 물질별 30 이하	GC-MSD (5)	
			3,3'-Dimethoxybenzidine..... ...119-90-4					
			3,3'-Dimethylbenzidine.... 119-93-7					
			3,3'-Dimethyl-4,4'-diaminodiphenylmethane.... ...838-88-0					
			2-Methoxy-5-methylaniline.... 120-71-8					
			4,4'-Methylenbis(2-chloroaniline).. 101-14-4					
			4,4'-Oxydianiline ...101-80-4					
			4,4'-Thiodianiline... 139-65-1					
			O-Toluidine... ...95-53-4					
			4-Methyl-1,3-Phenylenediamine.. 95-80-7					
			2,4,5-Trimethylaniline.... ... 137-1-7					
		염 색 견뢰도 (급)	세탁		3-4이상	3-4이상	3-4이상	KS K 0430
			마찰	건	4이상	4이상	4이상	KS
				습	2-3이상	2-3이상	2-3이상	K 0650
			땀	산	3-4이상	3-4이상	3-4이상	KS
알칼리	3-4이상			3-4이상	3-4이상	K 0715		
물		3이상	3이상	3이상	KS K 0645			
세탁수축율 (%)	직물		±3	±3	±3	KS		
	편물		±6	±6	±6	K 0454		
	냄새		없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일반 시험법 (6)		

NO	대상제품	부여기준	인증사유
4	인체 저자극성 섬유 제품류	주 : (1) 셔츠류, 블라우스류, 내의류, 잠옷류, 운동복류, 양말 및 장갑류, 이부자리류, 세면용품류, 취사용품류, 기타 피부지속접촉 품류 (2) 솜류, 사류, 직물류, 외의 및 중의류, 의류, 악세사리류, 신변용품류, 벽걸이류, 가구용품류, 실내장식품류, 매트리스 및 깔개류, 기타 피부간헐 접촉용품류 (3) 시료추출 : 초임계 추출법(SFE)-EPA 3561 (4) 시료땀액추출 : 인공땀액 (DIN 54020), 추출조건 : EN71-PART3 (5) 시료전처리 : DIN 53316 MMP 552 NO. 02-96, Citrate buffer 추출법 (6) 관능 평가	인증사유 유해물질 함유량이 낮음
37	레이저빔프린트용 재충전 토너카트리지	- 드럼과 와이퍼 블레이드(Wiper Blade)를 제외한 모든 부품은 수거된 제품의 부품을 재사용하여야 함. (단, 수거시 파손된 부품은 제외) - 충전된 재생품의 출력능력중 해상도는 원제품과 동등해야 하며, 출력 매수는 충전된 토너의 양을 비교하여 원제품과 동일하여야 함. - 재생품의 외부에 재충전업체의 연락처와 "재충전된 제품"임을 명시하여야함. - 재충전된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보상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감소

**'97 유통합리화사업지원요령**

중소기업청공고 제1997-71호 1997. 3. 26

I. 부문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지원 부문	지원 규모
〈유통합리화 사업〉	81,400
- 유통정보화	5,000
- 공동집배송단지건립	33,400
- 집배송센터 건립	10,000
- 물류표준화	20,000
- 물류 공동화	10,000
- 공동물류 정보망 구축	3,000

II. 지원사업 및 응자대상

지원사업	응자대상
1) 유통정보화	- 판매시점정보관리, 자동수·발주, 전자문서교환등 유통정보화시스템의 개발 또는 관련기기의 도입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 공동으로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연쇄화사업자, 상업협동조합등 유통사업자 단체
2) 공동집배송단지건립	-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소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집배송 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97년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자
3) 집배송센터건립	- 개별적으로 집배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시범도매센터 사업자, 연쇄화사업자, 도매배송업자 등의 유통사업자
4) 물류표준화	- 유닛로드시스템통칙(국립기술품질연구소 제1995-909호, '95. 12. 18)에 의한 표준규격의 팔렛 및 이에 적합한 팔레타이저, 래크, 컨베이어, 포장시스템, 자동창고시스템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
5) 물류공동화	- 공동수·배송, 공동보관 등의 물류공동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류센터의 설치, 정보시스템구축, 수·배송차량 구입 등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 등이 구성원을 이루는 사업자
6) 업종별 공동	- 물류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종별 관련기업 또는 공업단지내 관련기업 등이 구성원을 이루는 사업자

Ⅲ.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구분	한도액	융자비율	융자금리	융자기간
유통정보화	- 1억원 이내 (단, 공동유통정보시스템 구축시 5억원 이내)	- 사업비의 100% 이내	연 6.5%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함	- 기반공사비 및 건축비의 30% 이내		
집배송센터건립	- 10억원 이내	- 기반공사비 및 건축비의 50% 이내		
물류표준화	- 10억원 이내	- 사업비의 50% 이내		
물류공동화	- 50억원 이내	- 사업비의 50% 이내 (단, 물류센터의 설치비는 기반공사비 및 건축비만 인정)		
업종별공동물류 정보망 구축	- 30억원 이내	- 사업비의 50% 이내		

Ⅳ. 지원절차

1. 융자지원 신청

가. 신청기한 : 1997년 4월 30일 까지

나.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행정구역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에 신청. 다만, 서울지역은 중소기업청(유통업국 전문소매업과)에 신청

다. 취급은행 : 관리은행(중소기업은행)과 『산업기반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축협, 수협, 농협, 한국종합기술금융,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라. 신청서류

- 산업기반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2부

2. 사업자 선정

가. 중소기업청장은 1997년 6월 30일까지의 신청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한 후 사업자를 선정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수행방법 및 타당성
2. 설치시설의 중요도 및 국산화율
3. 생산성 향상도
4. 설비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비율

5. 기업의 규모

6.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내용

나. 융자사업자의 통보 등

○ 중소기업청장은 융자사업별 기금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융자사업자 및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고 동 내용을 지방중소기업청장(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 취급은행의 장은 조속한 기금대출을 위하여 확정된 융자사업자에게 기금대출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3. 신청자 의무사항

가. 대출완료 기한

기금을 융자받기로 확정된 자 (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기한연장 조치가 없는 한 확정 통보후 1년 이내에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나. 목적외 사용금지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는 자금을 지정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 구분계리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라. 보고의무

융자사업자는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 제21조에 정하는 내

용의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관할 행정구역의 지방중소기업청장(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지역은 중소기업청장(유통업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V. 사후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은 사업자가 용자사업자로 확정될 경우 기금사업이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VI. 대출자금 회수

중소기업청장은 용자사업자가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에 따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VII. 참고사항

가. 기금 특성

○ 동 기금사업은 정부에서 자금을 조성하고 자금관리 및 대출은 취급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취급은행에서는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용자사업자에게 담보, 또는 신용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출금액은 용자확정금액내에서 사업진행분에 대하여 용자비율만큼 설비업체에게 지출된다.

나. 지원제한

○ 용자신청자가 용자사업자로 확정된 후 자체사정에 의한 사업의 부진, 또는 담보제공 부족등의 문제로 1년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향후 동 기금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다. 기타

동 공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통상산업부고시 제1997-42호)을 적용한다.

**자본재표준화 사업 운영 요령**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42호 1997.4.9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자본재산업육성 대책 (95.5.10. 신경제추진회의)에 의한 자본재 표준화 사업(이하 "표준화사업"

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본재"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2에 계기된 기계류 부품 및 소재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공업 및 에너지 기술개발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주관기관 중 표준화사업의 관리·평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발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위탁된 표준화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이 직접 표준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4. "표준개발자"라 함은 표준화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참여형태 및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총괄책임자"라 함은 표준화과제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과제별로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발연구원"이라 함은 총괄책임자를 보조하여 표준화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개발보조원"이라 함은 타자·계산·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자를 말한다.

라. "전문위원"이라 함은 산업표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표준화기획단의 위임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하고, 전문위원은 표준개발안 및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5. "공용화"라 함은 2개 이상의 업체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규격을 제품 설계·디자인 등에 반영하여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표준화사업의 범위 등)** 표준화사업은 다음 각호1의 사업을 말한다.

1. 표준화과제를 조사·발굴하기 위한 표준화 수요조사 사업

2. 자본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야에 대한 표준개발 사업

가. 기계류 부품 및 소재를 관련기업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규격의 통일·단순화가 필요한 분야

나. 수출산업화 및 자동화·정보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규격과 국제규격 혹은 외국 선진규격과의 부합

화가 필요한 분야

다. 수입규모가 크거나 첨단기술분야로서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행적 표준화가 요구되는 분야

3. 제1호 및 제2호의 표준화사업과 관련한 기획·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연구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표준화기획단의 설치 등

제4조 (표준화기획단) ① 표준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립기술품질원에 표준화기획단을 설치한다.

② 표준화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본재 표준화 5개년계획 및 매년도 표준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표준화과제의 선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표준화과제별 사업계획의 조정 및 확정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표준화수요조사등 표준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표준화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통상산업부 기술품질국장·기초공업국장, 국립기술품질원 표준계량부장·기계전기부장
2.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임원
3. 한국산업표준원 원장
4.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표준화 관련 전문가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표준화기획단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국립기술품질원 기계 금속표준과장이 된다.

제5조 (실무추진반) ① 표준화기획단의 심의안건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기획단 내에 실무추진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반은 표준화기획단.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6조 (전담기관의 업무) 전담기관은 표준화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화 수요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편성·운영 및 조사결과의 분석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계획서의 접수·검

토·조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표준화 과제의 기술적 검토를 위한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표준화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7조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는 전담기관 및 개발기관의 소속 직원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화과제의 기술적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부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전담기관 또는 개발기관의 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표준화사업계획의 수립추진

제8조 (수요조사의 실시) ① 국립기술품질원장은 자본재 분야의 표준화과제를 조사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표준화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조사방법·참여인원·조사반 편성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수요조사결과의 활용) 국립기술품질원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관련 연구기관·학계·산업계에 배포하여야 하며, 표준화사업의 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준화사업계획의 수립·공고) ①국립기술품질원장은 표준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표준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당해년도 표준화과제중 지원대상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된 표준화사업계획 및 당해년도 지원대상분야는 공고에 앞서 표준화기획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고에는 표준화과제명·신청자격·접수처·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립기술품질원장은 국내산업 및 국제 표준화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준개발계획서의 접수 및 검토)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본재표준개발계획서(이하"표준개발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제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전년도 중간보

고서의 제출로 신청에 갈음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표준화과제별 추진목표·내용 및 수행방법
2. 개발기관의 관리능력, 총괄책임자 및 개발연구원의 수행능력
3. 표준화사업비 계상방법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4. 기타 표준화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개발기관의 확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과제별 평가내용 및 개발기관의 선정 등의 검토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평가결과를 표준화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표준화사업비)** ① 전담기관 또는 개발기관이 표준개발계획서의 작성 또는 검토·조정 에 필요한 표준화사업비의 각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건비는 표준화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표준개발자 1인이 여러 표준화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당해 1인의 전체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공무원으로서 정부에서 보수를 100% 지급받는 표준개발자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표준개발자가 생산자단체 혹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직원인 경우에는 당해 표준개발자의 인건비중 20% 이상을 자체 부담으로 계상한다.

2. 경비는 표준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중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 계상하며, 국외여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나. 자료 구입비 및 인쇄비는 당해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료구입비, 문헌 복사비(지대포함) 및 인쇄비등을 말한다.

다. 회의비는 회의 수당과 회의관련 부대비용을 말하며, 회의수당은 당해 표준화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외부에서 위촉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 임차료는 공청회등을 위하여 회의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료는 연 2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마. 전산비 및 통신비는 당해 표준화과제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전산처리비용,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을 말하며, 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혹은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민간부담으로 계상한다.

바. 표준개발결과의 시험·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사업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및 경비(총 경비중 가목과 바목을 제외한 금액)총액의 5%의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② 국립기술품질원장은 표준화사업비의 조정없이 는 전체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체적인 자본재표준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표준화사업계획의 협약은 통상산업부장관과 전담기관의 장간에 체결하고, 개발기관에 위탁하는 표준화과제는 과제별로 전담기관의 장과 개발기관의 장간에 체결한다.

**제15조 (협약 및 위탁내용의 변경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약내용에 대하여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표준화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전담기관의 장이 국립기술품질원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기관에 위탁한 표준화과제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과제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개발기관이 고의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때

2. 개발기관의 해산, 표준개발자의 과반수 이상의 유고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때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과제



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지급된 사업비 중 미집행금액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사업비와 지급중단한 사업비의 상당액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 혹은 새로운 표준화사업의 소요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표준화사업비의 지급)**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화과제의 규모·착수시기 및 출연금의 지급시기등을 감안하여 개발기관에 표준화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표준화사업비의 관리)** ① 개발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표준화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관에서 2개 이상의 표준화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개발기관의 장은 표준화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국립기술품질원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비는 과제별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각 비목별 적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표준화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당해 표준화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상된 인건비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보수체계·참여인력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과제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내에서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사업결과의 보고)** ① 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는 당해 표준화과제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는 당해년도 사업 종료일 10일전까지 중간보고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 또는 중간보고서(이하 "사업결과"라 한다)를 접수받은 때에는 표준화과제별 추진실적·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결과의 평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계속" 또는 "보완"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친후 그 결과를 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으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하여 표준화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보완"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보완결과에 대하여 "종료"또는 "계속"으로 평가하고 이를 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결과의 활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반기 또는 매년도 표준화사업결과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결과의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결과에 대하여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단체표준으로 제정하여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리운영예산)** ① 표준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자금에서 조성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개발계획서의 평가·관리, 평가위원회의 수당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당해 표준화사업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요경비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표준화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 제 4 장 공용화사업의 지원등

**제22조 (공용화업체의 지원 등)**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를 추진하는 업체(이하 "공용화업체"라 한다)는 공용화제품의 개발·생산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1. 공용화업체에 대한 지원

가. 구조·형태·치수 등 설계 변경 및 시작품 제작을

위한 산업기술자금

나. 치공구·금형 및 설비투자를 위한 중소기업자동화 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2. 공용화완료업체에 대한 지원

가. 당해업체가 여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산업기술 자금

나. 당해업체가 여타 제품의 자동화·정보화설비 등의 투자를 위한 중소기업 자동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

라. 기간 산업체(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 부여

**제23조 (공용화업체의 등록 등)** ① 공용화업체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용화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공용화추진단체"라 한다)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공용화완료시에도 또한 같다

- 1. 공용화업체의 개요(대표자 주소 등 일반사항)
- 2. 공용화 제품명 및 적용규격명
- 3. 공용화제품의 시장형태 등

② 공용화추진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내용을 확인하고 공용화제품 및 공용화업체를 선정하여 단체별 공용화 추진계획서(별지 제3호의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공용화 완료시(별지 제4호의 서식)에도 또한 같다.

③ 국립기술품질원장은 표준화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공용화제품·규격명 및 공용화업체를 확정하고 관련기관의 장에게 이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용화업체의 사후관리)** 국립기술품질원장은 공용화추진단체로 하여금 공용화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공용화규격)**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규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격을 말한다.

- 1.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단체 표준
- 2. 공용화추진을 위하여 표준화기획단이 인정하는 국내외 규격

**제26조 (공용화제품의 우선구매 등)** ① 국립기술품질원장은 공용화제품 및 공용화제품을 사용한 완성품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우선구매, 검사 또는 형식승인등의 면제, 인증획득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립기술품질원장은 공용화업체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산업부장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포상심의에도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공용화제품 구매업체에 대한 지원)** 국립 기술품질원장은 공용화제품 및 공용화제품을 사용한 완성품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공용화추진단체의 장의 일괄신청을 받아 외화대출지원대상품목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대규모 공용화사업)** 국립기술품질원장은 대규모 공용화사업을 완료한 업체가 통상산업부 장관이 주관하는 기술개발사업등을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표준화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공용화제품의 권리승계)** 기업간 합병하거나 공용화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공용화 제품의 관련업체로 생산을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경우, 이 요령에 의하여 당초 공용화제품 및 공용화 업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그대로 승계 되는 것으로 본다.

제 5 장 기 타

**제30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한국산업표준원으로 한다.

**제31조 (공용화추진단체의 범위)**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추진단체라 함은 이 요령 제4조제3항 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단체와 표준화 기획단이 따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2조 (심의수당의 지급)** 국립기술품질원장은 표준화기획단 및 실무추진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반원중 정부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부회 및 전문위원회에 준하는 수당을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수당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고시)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27호(96.3.16)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97년도 자본재 표준화사업계획**

국립기술품질원공고 제1997-106호 1997. 3. 26

공업 및 에너지 기반기술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자본재표준화사업운영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자본재 표준화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표준화 과제명 : 별항
2. 신청자격 :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 등
3. 접수처 : 한국산업표준원(전화 : 02·369-7932, 팩스

: 02·369-7825)

4. 신청기간 : 1997년 3월 26일부터

5. 신청서류 : 자본재표준화사업운영요령 제11조의 별표 1호서식(소정양식)에 따름

6. 문의처

○ 국립기술품질원 표준계량부 기계금속표준과

전화 : 0343·84-1814(교환 216~218)

○ 한국산업표준원(02·369-7932)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97 자본재 표준화 대상 과제**

분야명	과제명	용제도	비고
기계요소	고강도 처차용강	자동차용 강재로서 기어류 및 산업용 기어에 사용됨	공용화
"	캔(Can)용 주석도금강판 및 원판	통조림용 공관, 부탄가스통 등 각종 캔의 원자재	부합화
"	열간단조용 비조질강	자동차부품용 원자재로서 크랭크 샤프트, 너클류 등에 사용됨	공용화
"	스터드타입 크랙로라	자동기, 전용기의 캠구부를 비롯하여 각종 반송장치, 콘베이어, 제본기계, 머시닝센터의 공구교환 장치 등 직선운동의 가이드 로울러	선행화
"	로드엔드베어링	Linkage Control의 필수적인 기능부품으로 자동차, 건설장비, 섬유기계, 농기계 등의 lever 조작연결 구조에서 동력전달 부품	선행화
"	체크밸브	냉·난방기 사용시 가스의 역류방지 역할을 하는 밸브	공용화
수송기계	E/L용 T-30K 가이드레일 (Guide Rail)	엘리베이터의 Car 또는 균형추의 주행운동을 안내하는 레일	부합화
"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 성능 시험 방법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구성하는 주요부품인 브레이크라이닝의 시험방법	부합화
"	E/L용 스프링 완충기 (Spring Buffer)	엘리베이터의 Car가 이상원인(ROPE절단 등으로 인해 자유낙하할 경우 피트 바닥에 설치되어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부합화
"	와이어 하니스 커넥터 (Wire Harness Connector)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선연결용 단자	공용화
"	숄더(Shoulder)	지하철, 전철, 고속전철에서 레일을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부품	공용화
"	자동차용 축전지	자동차에 각종 전기부품에 공급되는 전류를 화학적에너지로 저축해두었다가 필요시 다시 전류화하는 장치	공용화
"	로프소켓(Thimble Rob)	로우프식 엘리베이터에 적용되는 부품으로 로우프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됨	부합화
"	자동차용 와셔	자동차부품 조립시 볼트·너트의 풀림을 억제하는 부품	공용화
"	점화케이블(Ignition Cable)	자동차의 점화플러그에 고압의 전류를 공급하는 전선	공용화
"	자동차용 볼트, 너트류	자동차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을 체결하는데 사용되는 체결요소	공용화

문어명	과제명	용도	비고
수송기계	E/L용 이동케이블 (Traveling Cable)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제어반과 Car사이의 전원공급, 신호제어 및 통신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선	부합화
"	비상용키(E/L승장도어용)	엘리베이터의 각 승강장 도어에 설치된 도어록을 해제하여 문을 개방하기 위한 특수기	공용화
"	자동차용 나사식휴대용 잭	자동차의 고장시 특히 사용자가 타이어 교체작업을 할 때 차체를 들어올리는데 사용되는 기구	공용화
"	호스 클램프	자동차의 냉각, 흡기, 연료, 윤활 및 난방의 각 계통에 사용하는 호스를 이음쇠붙이 또는 금속관에 접속하는데 사용	공용화
(중 략)			
공작기계	CNC공작기계용 로크너트	CNC공작기계 Ball Screw 및 주축의 Bearing 조립시에 고정하기 위한 부품	공용화
"	CNC선반용 공구홀더 및 소켓류	CNC선반의 터렛에 공구를 고정하는 장치	공용화
"	테이블 연결형 5면 가공기	공작물을 한번 고정하고 5개면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	선행화
"	CNC기어호빙머머신	수치제어장치로 자동조절,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호브를 공구로하여 기어를 가공하는 장비	부합화
"	CNC레이저가공기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조절 및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레이저 발진기에서 발생하는 빔을 이용하여 철판 등을 원하는 형상대로 절단하여 주는 장치	부합화
"	인덱스커플링	CNC공작기계의 공구대 및 머시닝센터의 로타리테이블 등 위치분할시에 사용되는 부품	공용화
"	프레스용 클러치 및 브레이크	프레스의 모터와 플라이휠에서 발생된 동력을 전달하고 정지시켜주는 사스텨	공용화
"	공장기계용 유·공압 분배기(Distributor)	유압, 공기압기의 유공압을 분배하여 주는 배관부품	공용화
"	공작기계의 안전기준(CNC선반, 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의 생산 및 평가에 필요한 안전기준	부합화
"	공작기계용 컴퓨터 수치제어 장치	공작기계의 각종 기능유니트를 제어하고(정밀도, 속도) 가공물의 형상 및 공정을 고려한 프로그램기능을 수행하며 타기기간의 통신이 원활하도록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시스템	부합화
일반산업 기계	전동 액츄에이터 (Electric Actuator)	각종 밸브 및 수문 등의 전동개폐를 위해 전동기 및 감속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3상유도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액츄에이터	선행화
"	무인 반송차(AGV)	제품의 운반을 인력없이 자동화하기 위한 시기	선행화
"	자동차 주차설비	자동차 주차설비의 자동화시스템 자동 In-Out관리 및 주차효율성 및 관리자동화	선행화
"	공기조화용 덕트 및 부품	공기조화 및 환기시설	공용화
"	소형공냉식 콘덴싱 유니트	냉동·냉장고, 프리허브참고 등 소형내등참고에 쓰이는 응축기	공용화
"	팬코일용 자동밸브	팬코일 유니트의 ON/OFF용으로 사용됨	공용화

일반산업 기계	AC소형정밀기어드 모터	자동화기기, 의료용기기, 영상기기 등 저출력·고토크가 요구되고 공간제한이 있는 자동화장치에 사용되는 부품	공용화
"	공업용 소결로	금속 또는 세라믹 물질 등의 소결에 사용되는 로	선행화
"	자동비파괴 검사장치	기계구성품, 건축구조물의 비파괴 검사에 사용(자분탐상, 와류탐상, X-Ray탐상, 초음파탐상)	부합화
"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이용 온수기	공용화
"	4방밸브(4Way Valve)	Heat Pump에서 냉방과 난방의 냉매사이클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됨	부합화
"	오일크리너(산업용)	엔진오일 및 유압 작동유를 여과하는 제품임	공용화
"	호이스트 크레인	생산물류용 운반기기로 중량물 이동용	부합화
"	COD자동측정기	수중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기	부합화
"	항공기용 브레이크 디스크	항공기 landing gear에 장착되는 브레이크 디스크	선행화
"	복사기용 드럼(OPC 방식)	보통용지 복사기(PPC 화상 형성부에 사용되는 유기 감광체)	공용화
"	캐비닛랙(Cabinet Rack 19")	방송설비 및 정보통신 부품장착용	공용화
"	냉동공조기용 냉각수 수질기준	냉동공조기기 냉각수 계통의 수명연장, 효율유지 또는 효율저하 방지를 위한 냉각수 및 보급수의 수질기준과 관리방법 규정	부합화
"	난방용 열교환기 및 급탕가열기	스팀 및 중온수를 열원으로하여 난방온수생산	공용화
(중 략)			
자동화	PLC 프로그래밍 언어	PLC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부합화
"	자동차용 네트워크 시스템	자동차의 각종 센서, 제어기 등의 전자제어 장치들 간에 데이터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선행화
"	STEP 형상 표현에 대한 표준화	STEP에서 정의하는 형상표현을 정형화함으로써, 모든 응용분야의 제품설계의 표현방법 제시	부합화
"	필드버스	각종 자동화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의 실시간 통신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부합화
"	STEP 명시적제도에 대한 표준화	기계, 건축 등 대부분의 도면작성 분야에서 정의되어야 할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도면작성을 표준화함	부합화
"	STEP 제품명세와 표준구조에 대한 표준화	STEP 통합자원을 위한 골격과 제품모형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제품과 관련된 일반사항 정의	부합화
"	STEP 조합제도에 대한 표준화	제품형상의 기하학적인 표현과 도면의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계를 통한 도면정보의 풍부화	부합화
"	페이지 기술 언어(SPDL)	데이터에 포함된 "포스트스크립트 레벨 2화면/프린터 출력연산"을 이용하여 페이지 출력을 규정	부합화
"	컴퓨터간 교환에서의 SGML 사용법	SGML 기술을 이용한 전자출판 단일매체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 베이스 출판에 활용	선행화
"	국제표준 및 기술보고서에서의 SGML 사용법	SGML 기술을 이용한 전자출판 임의의 텍스트 처리나 워드처리 시스템에 처리된 문서에 적용	부합화

분야명	과제명	내용	현황
자동화	수학 및 과학분야의 공용 SGML 엔터티	SGML 기술을 이용한 전자출판 임의의 텍스트 처리나 워드처리 시스템에 처리된 문서에 적용	부합화
"	비 라틴계 문자환경의 공용 SGML 엔터티	SGML 기술을 이용한 전자출판 임의의 텍스트 처리나 워드처리 시스템에 처리된 문서에 적용	선행화
"	산업정보망용 SGML형 공문서를 위한 DTD	문서 타입 정의를 이용한 SGML 문서작성	선행화
"	인터넷상의 월드와이드웹 문서 기술 언어(HTML)	SGML을 인터넷의 WWW 연결시스템을 통해 동일한 형태가 되도록 통일	선행화
"	인터넷상의 3차원 데이터기술 언어(VRML)	2차원 HTML을 확장한 형태로 인터넷으로 WWW 연결시스템을 3차원 자원의 통일화된 표현	선행화
"	대화형 인터넷 문서 작성언어 (JAVA)	다양한 인터넷 문서의 적용성 및 활용성	선행화
"	래스터 그래픽스의 내용구조	조달 및 운영지원 과정에서 서류로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전자파일로 저장관리	부합화
"	VLSI 설계자동화를 위한 논리 회로 합성용 데이터 형식	논리회로 설계분야, 레이아웃 설계분야, 공정단계, 검사단계	선행화
"	VLSI 설계자동화를 위한 상위 레벨 합성용 데이터 형식	논리회로 설계분야, 레이아웃 설계분야, 공정단계, 검사단계	선행화
"	VLSI 설계자동화를 위한 논리 회로와 상위레벨 인터페이스 데이터 형식	논리회로 설계분야, 레이아웃 설계분야, 공정단계, 검사단계	선행화
"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 - 제4부 : 키보드 요건	사용자로부터 한 문자열의 키 입력을 받는데 효율성을 결정하는 키보드의 특성을 규정	선행화
"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 - 제5부 : 워크스테이션 레이아웃 및 자세요건	VDT 사용자를 위한 작업장 설계에 대한 규정	선행화
"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 - 제6부 : 환경요건	VDT 사용자를 위한 작업환경설계를 규정·효과적인 VDT운영을 촉진하는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편안한 작업 조건을 제공	선행화
"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 - 제7부 : 디스플레이 및 반사광 요건	사무실 작업용 VDT의 사용에 대한 인간공학적 요건 규정	선행화

분야명	과제명	용도	비고
자동화	SGML 시스템의 적합성시험	SGML문서, SGML적용프로그램 등의 활용 및 유통촉진을 위한 적합성 시험 요건 정의	부합화
"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 - 제10부 : 대화구성원칙	사용자 작업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규정	부합화
"	STEP의 적합성 시험방법 및 기본구조 - 일반개념	STEP문서의 활용 및 유통촉진을 위한 적합성 시험의 방향제시	부합화
"	기술도면 데이터교환규격 (IGES) 5.2 버전	이기종 자동화시스템간에 제품정보 교환을 위한 미국국가표준인 IGES의 5.2버전을 국가규격화함. 1차년도 개발한 IGES 4.0은 현재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규격이며, IGES 5.0은 향후 발전되어 갈 방향임.	선행화

'97 자본재 표준화 예비과제 <생략>

**'97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지원지침**  
 통상산업부공고 제 1997-27호 1997. 3. 10

1. '97년도 지원 규모 : 2,927억원
  - 가. 시제품 개발사업 : 2,300억원
  -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627억원
2. 융자대상
  - 가. 시제품 개발사업
    - (1) 통상산업부장관이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 고시한 전략품목의 개발사업
    -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 (3)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 \* 공동개발사업은 2개 이상의 업체가 민간 생산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

- 389호)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 (3) 기타 통상산업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 공동개발사업은 참여율 2순위 업체가 1순위업체 사업비의 50%이상을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1개 이상 업체는 동일계열 기업군 소속이 아니어야 함.
- 3. 융자조건 및 한도
  - 가. 구 분 : 산업기술자금 (재특)
  - 나. 대출금리 : 연리 6.0%
  - 다.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 라.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 마. 과제당 한도액 : 30억원
    - \* 통상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도액 초과지원 가능
- 4. 융자 취급기관
  - 가. 시제품개발사업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나.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부문에 한함)

5.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취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신청·접수기관 : 상기 융자취급기관

다.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라. 신청서류

(1) 융자신청서 2부

(2) 기타 참고 자료

6. 지원우대조치

가. 시제품개발사업

-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를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동종업계의 공동개발 조직이 구성된 품목
- 자본재기술개발관리단이 개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품목
- 생산자 단체에서 표준화 또는 공용화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나. 첨단 기술제품 개발사업

-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총 매출액의 3%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의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후속적으로 실용화 개발하는 경우

7. 신청자 의무사항

가.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 (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임하는 자의 기한 연장조치가 없는 한, 확정통보후 3개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수수료 납부

- 융자사업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목적외 사용금지

-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때에 지정된 용도의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 구분계리

-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마. 보고의무

- 융자사업자는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영요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보고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